

해 양 수 산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기 관 명 부산광역시, 서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내 용

부산광역시는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동산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동산인 어장관리선 등의 중요재산을 아래 【표 1】과 같이 취득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구분	중요재 산명	사업비 내역(천원)			규모	준공일
		계	국비	지 방비		
합 계		24,592,340	13,535,470	11,056,870		
본청	○○○수협 ○○○위 판장	1,400,000	800,000	600,000	2,873㎡	2014. 8.21.
	○○○수협 ○○○위 판장	7,700,000	4,400,000	3,300,000	5,436㎡	2016. 7. 5.
	○○○수협 ○○○직매장	750,000	450,000	300,000	576㎡	2016. 5. 3.
수산자 원연구 소	○○○○분석기	131,340	65,670	65,670	장비 1식	2014. 7.30.
	○○분석기	149,994	74,997	74,997	장비 1식	2015. 4.17.
	○○○시료 ○○○기	93,606	46,803	46,803	장비 1식	2016. 5.26.
서구	○○○○기	49,500	27,500	22,000	1식	2015. 2.27.
북구	○○○○○○ ○○○시설	72,000	40,000	32,000	1식	2016. 4.25.

해운대구	○○○ ○○기	70,200	39,000	31,200	7.5톤	2015. 2.16.
	○○○ ○○기	72,000	40,000	32,000	7.5톤	2016. 6. 3.
사하구	○○○○선	45,000	25,000	20,000	1척	2016.10.5.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1,333,000	800,000	533,000	5,521㎡	2016. 7.19.
강서구	○○○○선	76,500	42,500	34,000	1척	2014.11.19.
	○○○○○ ○○시설	70,200	39,000	31,200	1식	2014.12.26.
	○○○회관	108,000	60,000	48,000	118㎡	2015. 2.27.
	○○○○○ ○○시설	72,000	40,000	32,000	1식	2015.12.19.
	○○○○선	45,000	25,000	20,000	1척	2016.11.28.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	2,800,000	1,400,000	1,400,000	5,402㎡	2014.12.31.
기장군	○○○○○○○○○ 센터	4,000,000	2,000,000	2,000,000	3,940㎡	2016.11.30.
	○○○ ○○○○○○ 테마광장	1,600,000	800,000	800,000	3,880㎡	2016. 4.15.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960,000	480,000	480,000	996㎡	2014.12.19.
	○○수협 ○○위판장	2,450,000	1,400,000	1,050,000	2,579㎡	2016. 1. 8.
	○○○ ○○기	244,000	200,000	44,000	5톤 3기 7톤 1기 7.5톤 1기	2014. 7.23.
	○○○ ○○기	150,000	120,000	30,000	5톤 3기	2014. 5.29.
	○○○ ○○기	150,000	120,000	30,000	5톤 3기	2015. 5.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¹²³⁾에 대한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한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및

123) 중요재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중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부동산과 그 중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중물, 항공기, 취득원가 5천만원 이상의 기계, 장비 등의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 12.-(9)에 따르면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 ○○○○○○시스템에 상시 공시하고, 중요재산은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며 6개월 마다 변동 현황을 수정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7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취합하여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공시하고,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 및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주기적(반기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청·○○○○연구소 및 서구 등 6개 구·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어장관리선 등의 중요재산을 【표 2】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현황

구 분	해당기관 인터넷홈페이지 공시	중요재산공개 시스템공시	관리대장 작성·비치	변동사항 보고여부
○청	×	×	○	○
○○○○연구소	×	×	○	○
서구	×	×	×	해당없음
북구	×	×	○	○
해운대구	×	×	○	해당없음
사하구	×	×	○	○
강서구	×	×	○	해당없음
기장군	×	×	○	○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청, 서구청장, 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사하구청장,
강서구청장, 기장군수는

[시정]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및 어장관리선 등
중요재산에 대해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변
동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